

# 고 시(안)

제198-122호	제122호
담당자	법제실사제장법무담당관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122호

## 공 공 하 수 도 설 치 인 가

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6동 배수불량지역 하수암거 설치공사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설치인가하고, 하수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(코자)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하수처리과(전화 : 3707-9932), 영등포구청 치수과(전화 : 670-3415)에 비치하고,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8. 4.

## 서 울 특 별 시 장

가. 사업시행자

- (1) 명칭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- (2)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-1

나. 사업시행의 목적 :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재산보호

다.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: 별항

라. 설치시설의 종류 및 명칭 : 별항

마.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: 별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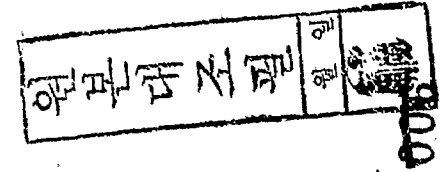
바. 사업시행기간 : 별항

사. 토지등의 소유자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: 별항
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 조서 : 별항

일 본 대 조 필
원 일

#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조서



일련번호	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		설치 시설의 종류 및 명칭		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		사업시행기간	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			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의 조서 등						
	위치	면적 (㎡)	종류	명칭	예정배수구역	예정처리구역		소유자		이해관계인	구분	지번	지목	소유권의권리			
								성명	주소								
1	신길5동 419~ 신길6동 508	30,720	관거	합류식관 □3.0×2.0 L=1,234m  D=1,200mm L=46m	안양천	가양			서울특별시			토지	신길동4035-9	답			
									"			"	"	"		4035	"
									"			"	"	"		2364-1	구거
									서울특별시의외1인			"	"	"		2362	대
									서울특별시의외4인			"	"	"		2369	전
									서울특별시			"	"	"		3921	잡종지
									"			"	"	"		3900	"
									"			"	"	"		3879	대
									"			"	"	"		3897-3	도로
									"			"	"	"		3868	대
									"			"	"	"		3888	"
									"			"	"	"		3859	"
"	"	"	"	2798	"												
"	"	"	"	2799	"												
"	"	"	"	2800	"												
"	"	"	"	2801	"												

일련번호	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		설치 시설의 종류 및 명칭		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		사업시행기간	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			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등			
	위치	면적 (㎡)	종류	명칭	예정배수구역	예정처리구역		소유자		이해관계인	구분	지번	지목	소유권의의권리
								성명	주소					
								서울특별시의1인			토지	신길동2761-1	대	
								서울특별시			"	" 2856-1	"	
								"			"	" 3577-1	전	
								"			"	" 3599-1	대	
								"			"	" 3641	답	
								"			"	" 429-24	"	
								"			"	" 431-30	대	
								"			"	" 431-34	답	
								"			"	" 431-35	"	
								"			"	" 427-17	대	
								"			"	" 427-18	"	
								"			"	" 426-5	답	
								"			"	" 429-19	대	
								"			"	" 429-22	"	
								"			"	" 429-20	답	
								"			"	" 431-28	대	
								"			"	" 431-32	답	

# 서울특별시

우 100-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346-9 / 전송 731-6379  
처리 부서 : 시설계획과 (본관 후문 상업은행5층) 계장 : 김명용 담당 : 이용심

문서번호 시설 58410-425

시행일자 1998. 4. 14

경유 (제 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	장
보존			
도시계획국장	전결		
시설계획과장			
시설계획3계장			
기안	이용심	법무담당관	심사필
			협조

## 제목 도시계획시설(철도 : 도시철도)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

1. 지설감58700-1511('97.12.15), 지설감58410-10('98. 1. 6), 58410-128('98. 2. 4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상기 대호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시계획시설(철도 : 도시철도) 결정 및 변경결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'98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'98. 3.25) 결과 원안 가결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철도)을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.

따로붙임 : 1. 관계서류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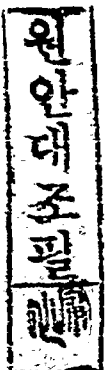
2. 고시문 및 도면(1/3,000) 각 1부. 끝.

(제 2안)

수신 : 건설교통부장관

참조 : 도시계획과장

제목 : 도시계획시설(철도 : 도시철도) 결정 및 변경결정

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철도 : 도시철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,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,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따로붙임 : 고시문 및 도면(1/3,000) 각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(제 3안)

수신 : 행정자치부장관

참조 : 법무담당관

제목 : 관보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(철도 : 도시철도) 결정 및 변경결정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

라. 게재내용 : 따로붙임 고시문

따로붙임 : 고시문 2부. 끝.

## 서울특별시

(제 4안)

수신 : 공보관

참조 : 공보담당관

제목 : 시보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